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및 그 처벌 규정 이관>

■ 김승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220호)

2025.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이 은 정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참고사항	2
IV.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내용	3
2. 현행 제도의 검토	8
3.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및 그 처벌 규정 이관	1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승수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12. 5.
3. 회 부 일 : 2024. 12.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아동학대 처벌 법제는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어, 아동학대 사건의 형사처벌에 「아동복지법」이 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아동복지법」의 주요 목적은 아동학대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으로,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규정은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동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복지법」에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된 아동학대 행위 및 이에 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법에 이동함으로써 법 체계의 일관성을 제고함과 함께,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처벌 수준을 정서적 학대행위보다 높게 규정하는 등 양형을 정비하여 아동 학대의 예방 및 대응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등).

III.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2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현재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 및 그 위반 시 처벌에 관한 규정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임.

○ 동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의안번호 제2206221호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와 그 위반 시 처벌에 관한 규정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71조, 제72조 및 제72조 등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2조의2(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u>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u> <u>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u> <u>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u>

현행	개정안
	<u>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u> 4. <u>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u> 5. <u>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u> 6. <u>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u> 7. <u>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u> 8. <u>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u> 9. <u>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u>

현행	개정안
<u><신설></u>	<u>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u> <u>10.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u> <u>제59조의2(금지 행위 위반죄) ①</u> <u>제2조의2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 다.</u> <u>1.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u> <u>2.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u> <u>3. 제4호·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 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u>

현행	개정안
	<u>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4. <u>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5. <u>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6. <u>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② <u>상습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u> ③ <u>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u> ④ <u>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u>

현행	개정안
	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현행 제도의 검토

가. 아동학대 및 관련 범죄에 관한 규율체계

□ 현재의 법체계에서 아동학대의 정의는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아동학대처벌법 등 타 법률에서도 이를 인용하고 있음.

○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를 의미하며, 아동학대란 보호자의 아동에 대한 유기·방임행위와 성인의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행위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함(제3조 제7호).¹⁾

- 아동학대의 개념이 다소 포괄적이므로, 아동학대처벌법은 일정한 경우 아동학대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음.

1)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다만,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 아동학대의 개념이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된 만큼 모든 아동학대가 범죄는 아닐 수 있으며, 아동의 보호 등을 위하여 아동학대이면서 범죄인 행위 중 일부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음.

○ 아동학대이면서 범죄인 행위에 대하여 특별한 규율을 두고 있는 법률로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이 있음.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한 아동학대범죄와 그 밖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살인죄를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정의하고 (제3조제7호의2),²⁾ 아동학대관련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음(제29조의3 등).³⁾

아동학대처벌법의 경우 아동학대 중에서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이자 동시에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학대범죄”로 정의하고 (제2조제4호), 아동 보호를 위한 범죄 처리 절차의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음.

2)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3)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7. (생략)

② ~ ⑦ (생략)

아동학대처벌법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처벌에 대한 특례뿐만 아니라 보호처분과 아동보호명령 등 형사처벌 외의 처리절차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음.

< 아동학대처벌법의 구조 >

구 분		조문	주요 내용
제1장	총 칙	§1~§3	목적, 아동학대범죄의 정의 등
제2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4~§9	개별적 아동학대범죄, 수강명령 병과 등 형사 처벌상 특례 등
제3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리 절차에 관한 특례	§10~§17-3	아동학대 조사, 임시조치, 응급조치, 긴급응급 조치 및 변호사 선임의 특례 등
제4장	아동보호사건	§18~§45	결정 전 조사, 조건부 기소유예, 보호처분 등
제5장	피해아동보호명령	§46~§58	아동보호명령, 국선보조인, 이행실태 조사 등
제6장	벌 칙	§59~§64	보호처분불이행, 업무수행방해 등

○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를 정의함에 있어 「형법」 등 여러 법률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아동학대와 관련된 범죄 및 그에 대한 규율은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규율 >

구 분	대상 범죄	관련 규율
아동학대관련범죄 (「아동복지법」)	-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범죄 - 아동 대상 「형법」상 살인	아동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아동학대범죄 (아동학대처벌법)	- 보호자의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다음 범죄 「형법」상 상해·폭행, 강간·추행 등,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등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범죄 -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수강명령 병과,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보호처분 및 아동보호명령 등

나.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유형과 내용

□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이면서 일정한 유형의 범죄에 해당하여야 함(제2조제4호).

○ 따라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상해·폭행 등의 행위라도 그 아동의
보호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아동학대범죄에는, 「형법」상 상해·폭행의 죄,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치사 등이 포함됨.⁴⁾

4)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학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 마.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의 죄
- 바.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 사.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 아.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 자.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차.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카.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 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하. 제4조(아동학대살해·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 아동학대처벌법은 「형법」의 여러 범죄를 아동학대범죄에 포함하고 있으나 살인의 죄는 포함하고 있지 않음.⁵⁾

□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아동학대처벌법상의 아동학대범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형법」상의 살인의 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관련범죄는 아동학대처벌법의 아동학대범죄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인정됨.

○ 특히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관련범죄에 대하여 보호자의 아동학대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한 아동 대상 살인이라도 아동학대관련범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임.

- 참고로, 아동학대처벌법은 보호자의 아동학대라야 아동학대범죄라고 규정하므로, 보호자의 행위가 아니면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지 않음. 그런데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정의하면서 아동학대처벌법의 ‘아동학대범죄’를 인용하고 있으므로, 보호자 아닌 사람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살인 외의 각종 범죄는 아동학대관련범죄에서도 제외되고, 그 결과 취업제한 등 제재도 받지 않게 됨.⁶⁾⁷⁾

5)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아동학대살해 등은 이미 다른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하는 등의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일반적인 아동 대상 살인 등과는 차이가 있음.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아동학대살해·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아동복지법」의 범죄 중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범죄에 포함
된 범죄는 동법 제71조제1항 중 제3호를 제외한 각 호의 죄임.⁸⁾

제71조는 3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2항 및 제3항은 학대
피해 아동에 관한 정보의 목적 외 사용이나 유출, 아동복지시설의
위법 운영 등에 대한 처벌규정으로 행정형벌의 성격이 강함.⁹⁾

-
- 6) 부산고등법원 2020. 5. 13. 선고 2019노664, 2019전노55(병합) 판결: “같은 법(註: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학대관련범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하는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일 것을 전제로 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의 보호자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원심은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 7) 이처럼 아동학대처벌법이 아동학대범죄에서 행위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보호처분, 조건부 기소유예 등 그 행위자에게 유리한 처분이 허용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정의할 때 아동학대범죄를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을 취하였기 때문에 취업제한 등의 제재를 적용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임.
- 8)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복지법」은 제7장 벌칙에 제71조부터 제75조까지 5개 조를 두고 있음. 여기서 제72조·제73조는 제71조제1항의 죄에 대한 상습범·미수범규정이고, 제74조는 제71조의 죄에 대한 양벌규정이며, 제75조는 과태료규정임.¹⁰⁾

-
- 9)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의2 제5항을 위반하여 피해아동관련 정보를 요청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6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이용한 사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1조 제2항에 따라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기는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제22조의5 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람
 3. 제50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4.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54조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전문인력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5. 제56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시설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한 자
 7. 제66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 10) 「아동복지법」 제72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73조(미수범) 제71조 제1항 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7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은 같은 법 제17조의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으로, 아동매매, 음행 강요·매개 및 성희롱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 중에서 제3호의 죄는 아동학대범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제3호의 내용이 아동 양육비의 목적 외 사용 등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임.¹¹⁾

<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범죄 >

금지행위(제17조)		처벌(제71조제1항)	
구분	내용	구분	처벌
제1호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제1호	10년 이하 징역
제2호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매개하는 행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제1호의2	10년 이하 징역 / 1억원 이하 벌금
제3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제2호	5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제4호	-		
제5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제6호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제7호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제8호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제4호	1년 이하 징역 / 1천만원 이하 벌금
제9호	공중의 오락·휴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제10호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요구·약속하는 행위	제3호*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제11호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아동학대범죄에는 포함되지 않음.

11) 제19대국회 제321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 (2013. 12. 16.), 23-24.

3.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및 그 처벌 규정 이관

가. 검토의견

□ 안 제2조의2는 「아동복지법」 제17조에, 안 제57조의2는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및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에 각각 상응하는 규정임.

○ 다만, 「아동복지법」과 개정안 내용이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님. 「아동복지법」에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의 법정형은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개정안에서 신체적 학대행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고, 정서적 학대행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임.

< 「아동복지법」과 개정안의 법정형 비교 >

금지행위	처벌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10년 이하 징역	좌동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매개하는 행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10년 이하 징역 / 1억원 이하 벌금	좌동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10년 이하 징역 / 1억원 이하 벌금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5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5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좌동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1년 이하 징역 / 1천만원 이하 벌금	좌동
공중의 오락·휴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요구·약속하는 행위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좌동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어떠한 행위를 범죄로 하고 어느 정도의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범죄의 죄질, 보호법익과 범죄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임.¹²⁾

마찬가지로 법률의 목적과 내용을 고려할 때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특정한 범죄를 어떠한 법률에 규정할 것에 대하여도 입법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과 절차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법률이므로(제1조), 이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학대행위의 금지와 그에 대한 처벌을 함께 규정하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음.

- 2012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당시에,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을 아동학대처벌법에 두는 방안이 검토된 바 있었으나, 당시 아동학대처벌법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901560호)은 「아동복지법」의 규정을 삭제하지 않고 아동학대처벌법에도 유사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법률에 유사한 내용을 중복하여 규정하는 것이 별다른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 그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하였음.¹³⁾

12) 현재 2013. 10. 24. 2012헌바85 등.

13) 제19대국회 제321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 (2013. 12. 16.), 23-24.

□ 개정안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규율 체계 개편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첫째, 현재 「아동복지법」에 따라 규율되고 있는 각 범죄별로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이관할 것인지 및 나아가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할 것인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재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중 제3호가 아닌 각 호의 죄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행위자와 무관하게 범죄에는 해당하고, 다만 아동학대처벌법의 아동학대범죄로 절차상의 특례 등을 적용받으려면 보호자에 의한 행위여야 할 뿐임.

따라서 현행과 동일한 규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상 각 범죄를 아동학대처벌법에 이관은 하되, 범죄 행위의 주체를 보호자에 국한하지 않아야 함.

그런데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 등의 규정을 목적으로 하여, 주체가 보호자로 제한되지 않는 범죄는 타법을 인용하고, 주체가 보호자로 제한되는 범죄만을 직접 규정하여 ‘아동학대범죄’의 범위에서만 규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각 범죄를 이관하면서도 그 주체를 보호자로 제한하지 않는 것이 현행법의 취지·체계에 부합하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임.

- 본 개정안과 함께 발의되었던 제2206221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에서도, 「아동복지법」은 아동보호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아동복지적 관점에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 금지행위를, 아동학대처벌법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죄 등을 “아동학대범죄”로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¹⁴⁾
- 또한, 개정안은 現 「아동복지법」 제17조제10호·제11호 및 제71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처벌되는 양육알선금품취득, 아동금품유용 등 범죄도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태도임. 그러나 해당 각 범죄는 아동의 양육비에 관한 것이어서 「아동복지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있었고, 이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정의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므로, 이러한 범죄까지 이관하는 것이 필요한지도 검토되어야 할 것임.¹⁵⁾

반면,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를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이관하면서 그 행위의 주체도 보호자로 제한하고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한다면,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의 규율체계와의 일관성은 유지할 수 있을 것임.

14) 정경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6221호 등) 검토보고 (2025. 1.), 27-30.

15) 「아동복지법」 제17조제10호 위반행위의 경우 무권한자의 양육알선이 아동에 대한 학대에 해당하는지, 같은 조 제11호 위반행위의 경우 아동금품유용이 같은 조 제6호 유기·방임행위에 준하는 아동학대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 경우 보호자 아닌 사람의 학대행위를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도 있어야 할 것임.

- 둘째, 「아동복지법」의 내용을 이관한다면 현행과 상이한 법정형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검토되어야 함.

어느 정도의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하여 입법자에게 재량이 인정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범죄의 형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지 아니하고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비례성을 갖추어야 하고(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성),¹⁶⁾ 죄질과 보호법의 등이 유사한 범죄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비슷한 법정형으로 처벌되어야 함(형벌체계상에서의 균형성과 평등원칙).¹⁷⁾

그런데 안 제57조의2에 따른 각 학대범죄 유형별 법정형은 현행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학대범죄 유형별 법정형과 동일하지 않으므로, 법정형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6) 현재 2017. 12. 28. 2016헌바368 등.

17) 현재 2011. 11. 24. 2010헌가42 등.

나. 관계기관의 의견

- 법원행정처는, 어떤 처벌규정을 어느 법률에서 규정할지 여부와 법정형의 종류·범위에 대한 선택은 법체계의 일관성, 일반 국민의 예측가능성, 수사실무상 운영 현황,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 형사정책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51